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31
----------	-------

발의연월일 : 2023. 12. 15.

발 의 자 : 인재근 · 양정숙 · 김정호
송갑석 · 김민석 · 소병훈
윤건영 · 서동용 · 도종환
최혜영 · 최종윤 · 설 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2013년 7월부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음. 현재 심사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 등의 위탁계약에 의한 심사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거해 비용을 징수하고 있지 않음.

다시 말해 보험회사 등이 수수료 지급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에 개입하거나 압박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심사기관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단서 중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각각 “심사평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1항의 업무 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제2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각각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22조의2 전단 및 후단 중 “전문심사기관”을 각각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 ③ (생략)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 ----- ----- ----- ----- 건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u>건강보험심사평가원</u>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	② <u>심사평가원</u> -----

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
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
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
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생 략)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
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
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
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심사평가원-----

-----.

⑤ 보험회사등은 제1항의 업무
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심사평가원-----

-----.

③ ~ ⑦ (생략)

⑧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심사평가원-----

-----.

⑨ 심사평가원-----

-----.

⑩ -----

----- 심사평가원-----

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② (생략)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략)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② ----- 심사평가원-----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

----- 심사평가원-----

----- 심사평가원-----

-----.